

* 전화 설문 조사시 유의사항

- 설문주체의 간단한 소개이후 설문에 대한 동의(양해)를 구한다.
- 간단하고, 건조하게 항목에 대해서만 질의한다.
- 설문마무리 후 설문에 응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한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과 관련하여

1.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1) 공무원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이러한 행동은 공무원들 자신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

헌법상 정치활동의 자유란 국가의 의사형성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할 권리다. 말하는데 그 중 가장 진보적인 형태가 참정권이며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정치적 의사 표시의 자유임. 지지선언은 정치적 의사표시에 해당함.

따라서 과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시하고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름.

이는 지지의 대상이 현 집권세력이 아니라 원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라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음.

(2) 대통령,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직권을 이용하여 특정정당을 돋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조는 비정치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떳떳하게 외부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단순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직무수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다.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지지선언은 공무원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

2. 관계기관의 주장

가. 행정자치부

○ 국가공무원법이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경찰에 고발한 상황임.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 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3. 현행법의 문제점들

(1) 현행법의 태도

88만명에 달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정당가입,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는 등 정치활동을 광범하게 금지하고 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가. 지나친 권리의 제한

○ 정치활동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되는 헌법 상의 권리다. 제한하더라도 필요최소한만 해야 하는데, 직무 수행 상 아무런 지장 없는 지지선언까지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선거법은 위현이다.

나. 직무의 중립성과 무관

○ 대통령이나 장관들처럼 몰래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정당을 돋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조는 투명하고 떳떳하게 지지선언을 하는 것이다. 비정치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지선언이 공무원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

다. 양심의 자유 침해

○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 침해이다. 공무원 노조의 지지선언으로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에게 돈 10만원 기부했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되지 않는다.

라. 형평에 맞지 않음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립대 교수의 정당가입은 허용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마. 시대착오적인 법률

직종과 직위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선진국 기준에 맞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

4. 외국 사례

국가	허용 범위
미국	연방공무원 : 공개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시, 정치자금 기부행위, 정치자금 모금행사 참여, 정치적인 뱃지, 스티커 착용 주 및 지방공무원 : 정치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시, 정당활동에의 적극참여, 특정정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영국	하위직 공무원 : 정치활동 완전보장 중간층 공무원 : 국회의원 출마는 금지, 다른 활동은 기관장의 허가 있어야 고위직 공무원 : 정당가입권, 투표권 인정, 그 외는 금지
일본	한국과 거의 동일
프랑스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당원가입 가능. 사직하지 않고 출마 가능.
독일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당원가입 가능. 사직하지 않고 출마 가능.

가. 미국

○ 1939년, 1940년에 걸쳐 제정된 햇치법(Hatch Act) : 연방공무원에게 적용

- 허용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 정치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정치기금 마련행사에 참여하는 행위, 정치적인 뱃지나 단추스티커 등을 달거나 표시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는 행위 : 유세행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정치자금을 모으는 행위, 정당의 사무실을 소유하는 행위.

○ 1974년에 개정된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

- 정치자금을 모으는 행위, 평상시에 정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허용.

나. 영국

○ 영국은 불문법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님. 각 기관별로 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

- 1집단(최 말단직. 산업계포함) : 정치활동을 완전히 보장.
- 2집단(서기 및 보조서기계급) : 국회의원 출마는 금지. 그 밖의 모든 정치활동은 기관장의 허락이 있어야 함.
- 3집단(행정계층, 집단계층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 정당가입권만을 허용.

다. 일본

○ 국가공무원법 제102조, 인사원규칙에 따라 광범하게 금지. 우리나라와 유사. 그러나 집회에 참여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한, 단순한 후보자지지 의사표시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라. 프랑스 및 독일

○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 프랑스는 일반공무원법에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전혀 없고, 독일도 독일연방공무원법에 금지 규정은 없고 다만 법관등에 대한 관련 법에는 금지규정 있다.

○ 공무원직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 출마까지 하는 마당에 선거운동 등 모든 것이 당연히 허용됨.

○ 프랑스는 하원의원에 당선되면 공무원직은 정직 상태와 유사. 임기만료시 복직. 독일은 당선되면 공무원직 사임해야.

(00)

• DRAFT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같은 특정정당에 유리한 활동을 하지 않는 시민단체조차 공무원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혹은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회원가입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살아있는 일 자체로서 공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해보려는 의지조차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 노조가 시대적 소명감으로 정치적 중립화의 미혹을 던지고 역사를 한 걸음 진전시킨 이번의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솔직히 여당도 아니고 아직 제 일석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민노당지지 선언에 대해 이렇게 우리 사회가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혹시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매카시적 해석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듦다. 아님 열우당의 대항세력으로서 민노당의 성장에 대해 위기 의식의 발로일지도 모르겠다. ~~민노당은 민노당의 정치적 목표가 민노당을 만들 수 있는 그 자체이며 민노당은 민노당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화 개혁의 의지가 매우 높은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낡은 제도가 바로 공무원 노조의 특정정당에 대한지지 입장에 대해 정부가 형사 고발 및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무총리는 총선관련 담화문에서도 매우 비중있게 공공연히 강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행 선거법과 공무원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고안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닐 뿐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넘어서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수의 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거나, 유세행위 등 적극적 활동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 1) 법률적으로 과잉입법의 소지가 농후하다. 현재 공무원 노조는 직무에 대한 철저한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지 정당의사를 밝힌 것만 갖고 중징계 운운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
- 2)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따른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 공직자와 국립대 교수들의 정치활동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정당 가입은 허용하면서 일반적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는 마치 IMF때 공무원 인원감축을 할 때 하위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 것과 유사한 정리 방식이다.
- 3) 또한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예전 공무원들이 권력의 통제 때문에 관변화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구태의 법률의 잣대를 현재 들이미는 것은 시대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도가 의식을 따라오고 있지 못한 것이다.

2004년 3월 25일
제작자: 김민석

4) 발제문에서 기본 논조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치의 상위 원리인 민주주의의 원리를 법치로 재단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지켜져야 한다.

향후

1) 공무원 노조의 민노당 지지를 계기로 삼아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론화를 꾀하여야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신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 정치작업도 시급히 해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 노조의 내부 조직상황도 있지만, 민노당지지 선언이 돌출적 행위로 우리 사회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정교한 정치 프로그램 속에서 배치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현재 공무원 노조가 보여준 선도적 투쟁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 선언에 대한 공세, 여론 주도력을 위한 미시적인 프로그램의 배치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특수영역에 대한 시사서로 투입되는 미시적인 시각적 강의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3) 제도 개선 작업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선거법 및 공무원법의 개정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큰 방향은 일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서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그래서 부득이 부득이 이를 제한할 경우, 이행상충에 해당하거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현저하고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면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공무원들의 일정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투명하게 보장하는 것이 융습한 밀실 출대기의 폐단이나 직무를 남용한 관권개입을 방지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하루빨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지지정당을 자유롭게 밝히고 내부의 토론을 활성화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진지한 제안들이 나오길 바란다.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이라는 근본적 자세에 흡결이 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사회가 공무원들의 정치성향 때문에,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에 하등의 영향도 없을 것이다.

평온 경제학은 자신의 책임을 져놓았던 것인 경제학은 아니라 청탁과 협박으로 청탁과 협박을 하는 수 있는
방법에 신경쓰는
사회학으로 어렵게 나가는 수 있는 냄새를 냄새로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 "그대가 대단한 문제였다!" ↑

금속정도를
해석하여
내부 문제를
의 주제를
하는 것

<기자회견문>

부패정치 청산의 주역으로, 민중의 희망으로
-진보정치의 희망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지난 50여년 동안 독재권력에 맞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엄청한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에서는 중립을 지켜내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러한 성찰은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 앞에 당당한 공무원 노동자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우국충정의 발현임을 밝힌다.

과거정권은 이 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아, 군사독재권력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의 선언은 권력의 힘에 굴복하여 빼앗겼던 천부의 권리를 되찾고자 함이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 한사람으로써 저항이며, 과거의 잘못된 오명을 벗어던지고 바로 서고자 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당당한 의침이다.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에 의하여 시대와 민중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며, 과거 공무원노조의 탄생을 막아내려 자행했던 정부의 무지막지한 탄압이 오히려 더욱 강건한 노동조합의 탄생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정부는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몸으로 저항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땅의 썩어빠진 정치권력으로부터 나라와 민중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이 나라 유일의 진보정당, 서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당, 노동자, 농민 그리고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완성을 도모하며, 국가와 민족을 구하라는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무원 정치활동 회복 선언은 단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현장 실천 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들의 선언을 현실로 이루어 낼 것이며, 오욕과 굴종으로 얼룩진 공무원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세우는 대 장정의 길에 13만

조합원 모두가 함께 복무하여 나갈 것이다.

2004. 3. 30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특별결의문> 부패정치 청산으로, 민중의 희망으로

- 진보정치의 희망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2001. 3. 24일 그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당당히 전공련 깃발을 민족의 희망을 담아 115개의 촛불로 밝혀냈다.

이어서 2002. 3. 23일 공권력의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침탈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알려 내었다.

더 나아가 2002. 11. 4일 정부의 기만적인 특별법 입법 기도에 맞서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탄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단결된 힘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반세기 굴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자랑스런 이 땅의 공무원노동자로서 새 시대를 장대히 열어 제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현실을 보라.

차떼기, 책떼기로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강탈한 수구보수 세력은 의회쿠테타인 대통령 탄핵 의결을 통해 민중들의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다.

우리는 이러한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에 더 이상 기성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권리를 쟁취하고, 역사와 민중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 “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몸으로 저항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진보정치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할 것이며, 독재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내몰렸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이 나라 민중들과 함께 희망을 열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90만 공무원노동자의 희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중과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이 나라 유일의 진보정당, 서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 부정부폐없는 깨끗한 정당, 민중

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를 통해 한 국사회 민주화의 서막을 선언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2004. 3.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조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및 민주노동당 지지와 관련하여

1. 개혁진보세력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 선택한 근거

가.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책이 공무원노조의 목표, 지향과 일치한다.

나. 사회개혁과 깨끗한 정치를 일구어내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국민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의 지향과 일치한다.

다. 60년 동안 보수세력의 권력독점과 국정농단에 의해 한국민중의 정치혐오감과 불신은 극도에 다다르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진보정당, 희망을 주는 정당에 투자하겠다.

라. 민중의 삶을 도외시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 이라크 파병, FTA비준안 처리 등에서 나타나듯이 소위 “개혁보수와 수구보수”의 차이는 상대적 차이일 뿐이다. 민중운동의 질적 비약을 위해 어렵지만 힘든 길, 종국에는 승리하는 길을 가겠다.

2. 총선대응의 방향과 원칙

가. 각종 여론조사(한겨레, 다음)에서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헌법적 권리인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선언하고 이를 사회의제화, 대세화 시켜낼 것이다.

나. 정권의 시녀이자 권력의 정치적 도구였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동시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국민적 바램에 부응한다.

다. 총선 국면을 통해 ‘부정부폐추방과 공직사회개혁’의 전제이자 강력한 무기인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전면화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3. 공무원노조 총선 대응방침

가. 목표

- 1) 조합원의 정치의식 고양과 공무원노조의 정치역량을 강화한다.
- 2) 공무원노조의 지지선언을 통해 개혁적 진보진영의 위상을 강화한다.
- 3) 지역별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결의를 통해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임호를 강화한다.
- 4)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 낙선운동에 연대역량을 강화하여 사회개혁을 실천한다.

나. 투표전술

- 1)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투표는 전국사업으로 진행한다.
- 2)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역단위별로 지지 엄호 한다.

다. 실천내용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의제설정을 본격화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딴지를 거는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
- 정당명부 투표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적극지지를 위한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서한문 발송
- 민주노동당의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지?성원
- 총선연대 낙천대상자에 대한 낙선운동 연대투쟁
- 제 정당의 공무원노조 관련 주요정책 비교안 제시
- 정치후원금 모금운동 전개
- 제16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평가를 통한 심판
- 제17대 총선후보자 정책질의 답변서 표준안 마련, 개별질의를 통한 검증
- 현장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간부들의 정치교양과 조직사업강화



공동대표: 박상중·최영도·이선종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담당 : 정책실장 이태호 (직통전화) 723-5051 (전자우편)gaemy@pspd.org)

제 목 : 논평제목 (2004. 3. 30. (총 2 쪽)

논 평

정치적 의사표현 가로막은 낡은 제도와 관행 바꿔야 할 때 네티즌, 공무원,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해야

1. 부패한 정치권이 사회의 변화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와 개혁의 의지는 더욱 적극화되고 있고 그 표현방법과 주체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낡은 제도와 관행이 가로막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 경찰이 인터넷에서의 정치 패러디를 문제삼아 한 네티즌을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죄로 체포한 것은 대다수 네티즌의 빙축을 사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기간 중의 탄핵무효 촛불집회가 선거법 위반이며 불법화한 것 역시, 선거법을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선거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공간이라는 점을 망각한 관료적 통제의 발상과 관행의 소치이다. 집회와 시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속위주로 대처하는 당국의 낡은 발상이 딱하다. 이들의 낡은 접근방법은 결과적으로 낡고 부패한 정치질서의 재생산을 돋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헌법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3. 낡은 관행과 더불어 낡은 제도 역시도 현실과 상충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동당지지 결정에 대해서 행자부가 검찰에 고발하고 자체 징계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위원장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과 공무원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고안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닐 뿐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가 넘어서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수의 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거나, 유세행위 등 적극적 활동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무원들의 일정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투명하게 보장하는 것이 읍읍한 밀실 줄대기의 폐단이나 직무를 남용한 관권개입을 방지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부득이 이를 제한할 경우, 이행상충에 해당하거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현저하고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처벌에 있어서도 제도의 미흡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4. 지난해와 올 초까지 이어진 정치관계법 개정은 돈안쓰는 선거,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그리고 감독기관인 선관위 권한강화 등의 과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지만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유권자들의 참정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확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선관위 등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문제는 지난 2000년 총선 낙선운동에 대한 불법시비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참정권 논쟁점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개원 이후 국회는 낡은 제도와 성숙한 시민사회의 간극을 해소할 새로운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기자회견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유회복 요구를 환영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 3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제적대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로 정치적 자유의 회복 선언을 결의한 사실에 대하여 민주시민단체는 이를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또다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명백한 위반으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하여 수사를 착수하였다 보도를 접하고 우려화 함께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공무원들은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오욕과 굴종의 세월을 보내왔으며 특히 선거기간 중에는 정권창출의 시녀를 강요당해 한국정치사에서 보수일색의 정권이 대물림되는 관건선거의 시비에 휘말려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진보정당 지지는 공무원들 자신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완전한 정치중립 실현을 위한 시금석을 쌓은 일로 평가하며 공직사회 개혁에 큰 획을 긋는 정치적 자유회복으로의 독립선언 이었다.

일각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하였다고 하나 이는 과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시하고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기존 부패정치권을 척결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서를 대변한 결의로 부정부폐 추방을 위한 주춧돌을 쌓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이번의 지지선언이 대통령, 장관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 특정정당을 돋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는 비정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떳떳하게 외부에 의사를 단순표명한 것으로 직무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 국민들에게 참봉사를 하겠다는 고뇌에 찬 결단이다.

한편 지난 1992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번호 : 대법 90도 2310, 1992년 2월 14일 판결)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또는 전면적인 기본권 제약을 해서는 안되며 제약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비교, 형량의 원칙)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최소한 제한의 원칙)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이라고 판시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정부는 선진국과 같이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것을 기대하며 실정법이라는 잣대로 공무원 노동자 탄압을 논하기에 앞서 정치개혁과 참여정치 활성화와 사회민주화의 최후의 보루인 일반법에 준거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먼저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민주시민단체는 공무원노조와 뜻을 같이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지지선언을 계기로 공무원노동자들에게 그 어떠한 위해가 가해진다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2004년 3월 31일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연합,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회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기독교시민사회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함께),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서울여성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대학교수회, 학술단체협의회 <총 68 단체>

성명서

□제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자유보장 요구를 지지한다

□수신: 각 단체/언론사

□발신: 전국민연합

(02)2234-7758~9 / 2232-0685~6

서울 종로구 숭인2동 313-2 형제빌딩 2층 / 전송 : 02-2232-0687 / www.nojum.org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자유보장 요구를 지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3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품으로 저항할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전국민연합은 정치적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세월동안 허울뿐인 정치적 중립이었을 뿐 공무원들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선거기간에는 정권창출의 시녀로 강요당해왔다. 이번 결의는 보수일색의 한국정치사에서 관건선거 시비에 휘말려왔던 것과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또한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공무원노조의 지도부를 중징계 하기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1992년 대법원은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또는 전면적인 기본권 제약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비정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의 죄결과 함께 투명하고 맷떳하게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직무수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번을 계기로 전국민연합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사상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에 대항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의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에 가해지는 어떤 위에도 탄압으로 규정하고 제 민중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4년 3월 31일

전국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02-755-6181 ~ 3, 02-755-6184(FAX) / <http://www.tnltk.or.kr>

위원장 : 원영만(元寧萬, 49)

보도자료

2004. 03. 31. 18 : 00(모두 02쪽)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문제 담당기자

발신 : 송원재(宋源宰, 45, 대변인, 2672-7412, 016-202-2771)

제 목 : [성명서] 시대착오적 잣대로 노동조합 탄압하는 '참여정부'는 각성하라!

-전교조 위원장의 사법처리 강행에 대해-

1. 정부는 오늘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교사 시국선언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들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더욱이 정부는 관계부처인 교육부가 실정법 위반혐의가 적어 고발에 난색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인지수사'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사법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2. 그러나 교사 시국선언은 부패·무능·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해 온 16대 국회를 비판하며, 종 선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부패정치를 청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현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3. 또 전교조 위원장의 홈페이지 게재 글 역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결정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민주노총 가맹노조 위원장으로서의 당연한 직무수행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의 노조결성과 상급단체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상급단체의 결정사항 전달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더욱이 교원노조법과 선거법 상호간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를 개인에게 모두 전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4. 정부가 강조한 '교원의 정치중립'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번 총선에서 특정 교원단체의 현직대표와 회원인 학교장이 특정정당의 전국구 후보로 내정되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학교장들이 특정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공연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야말로

‘교육의 정치중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교조의 일상적 노조활동만 집요하게 걸고넘어지고 있다.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선거를 빌미로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이다.

5.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극도로 제약 당했던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뼈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결성이 허용되는 등 최근의 사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도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활동 그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시대착오적이고 모순덩어리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사법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6. 우리 전교조는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은 부당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에 당당하게 출석하여 전교조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공무원과 교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선거법·공무원법 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진개하여, 시대착오적인 모순덩이리 법률을 반드시 뜯어고치고야 말 것이다. 끝.

2004. 4. 1.(목)

■ 문의 : 민주노총 공동연맹 춘수분파위원회 위원장 김재길(011-8113-5911)
철도노조 교선실장 전상동(019-683-3064)

철도, 지하철, 항공 등 11개 운수노조 대표들

“공무원 정치의사 표현 보장해야”

1. 철도와 지하철, 항공 등 11개 운수노동조합 대표자들은 1일 ‘정부는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사법처리와 중징계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반대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2. 운수노조 대표자들은 “전공노와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며 “이는 사회개혁의 디딤돌이며 민주주의의 정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특히 이들은 “업무상 철저한 중립을 스스로 선언하는 동시에 개인의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지극히 보편적인 주장이 어찌 불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법을 옮바르게 고쳐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끝으로 이들은 “‘공무원노조 처벌’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가 시대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위배하고 공무원노조에 탄압을 가한다면 공무원노조에 연대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첨부자료 1. 운수노조 대표자 공동성명서

정부는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사법처리와 중징계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오전 11시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탄핵과 관련된 시국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위원장이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형사고발 및 중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지하철, 항공 등 운수분야 노동조합 대표자 일동은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취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개인적인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 당해 왔다. 때로는 지난 50년간 권력의 통제에 의해 자신들의 의지를 빼앗겨 오면서 부정한 지시와 요구에 복무해 오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오히려 이런 역사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기초로 공무원의 업무에 있어서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개인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선언과 주장을 접하며 사회개혁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민주주의의 정방향으로 가는 중대한 계기로 평가한다. 업무상 철저한 중립을 스스로 선언하는 동시에 개인의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지극히 보편적인 주장이 어찌 불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대법원 판례도 징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그것은 공무원도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동당 공개지지 선언’으로 인해 공무원노조에 가해지는 어떠한 탄압에도 반대한다. 오히려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법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면 될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노조 처벌’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가 시대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위배하고 공무원노조에 탄압을 가한다면 공무원노조에 연대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공무원의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라

2004년 4월 1일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이원준,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윤택근,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허섭,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윤병범, 인천지하철노조위원장 김대영,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신만수,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이재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김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김규찬, 한국공항공사노조위원장 김영기

성명서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오늘 사무실을 나가던 원용만 위원장을 법원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기어코 강제연행하고 말았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1시경 성방환 충북지부장을 지부사무실 앞에서 연행하였다. 이어 1시 40분 김정규 경남지부장을 연행하였다. 대전지부의 경우 시국선언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현장교사에게 계속 출두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적 집회를 하고 있던 국민행동집행부에게 무차별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니 며칠 전에는 화물연대소속 노동자들을 법정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이를 전에는 정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명동성당 농성당 대표인 네팔노동자 샤말 타파 평등노조 이주지부장을 전격 강제출국 시켰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도 모자라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급해서 의도적으로 노정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으로 수구공안세력들의 후안무치한 공안탄압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교사와 공무원은 이 땅의 국민이 아닌가? 노동조합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에 따른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자유도 없다는 말인가? 탄핵사태로 온국가를 마비시켜놓고 부정부패로 나라망신 다시키는 부패한 정치집단들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규탄하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선언하는 것이 그렇게도 탄압받아야하는 일인가?

작금의 사태는 점점 올라가는 민주노동당의 지지도에 위협을 느낀 정권과 수구공안세력이 벌이는 야비한 공안적 탄압이고 공무원과 교사의 입과 손발을 묶고 정치적 굴종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행태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미 노동자들은 더 이상 보수정치의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런 탄압은 감추어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고 노동자의 각성을 깨울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지금의 보수공안세력과 대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온 것이 우리 민주노총의 전통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조합원이 성명서 발표운동에 나설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집권여당과 공안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전 4.15 총선에서 각성된 조합원들이 나서서 정치판을 뒤집어놓을 것이다.

작금의 탄압소동에 대해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연행자들을 빨리 석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현정권과 공안세력이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고직연노동조합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전화 : 02-2675-6181~3 / 전송 : 02-2675-6184 / 위원장 : 원영만(元寧萬, 49)

<http://moim.ktu.or.kr/eduhope/>

2004년 04월 02일 16시 00분(모두 02쪽)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문제 담당기자

발신 : 전교조 대변인 송원재(宋源宰, 45, 2672-7412, 016-202-2771)

제목 : 경찰의 위원장 연행에 대한 전교조의 성명서

‘참여정부의 머슴’ 고건 총리는 주인의 염원을 배신하려는가?

1. 경찰은 오늘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 등 간부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한 데 이어, 원영만 위원장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였다. 경찰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고건 총리가 오늘 아침 국무조정회의에서 ‘엄단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전교조의 정상적 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다.
2. 경찰이 체포 자유로 제시하고 있는 ‘교사 시국선언’은,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한 것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로 떠오르고 있는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깨끗한 개혁정치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대변한 것이다.
3. 그런데도 이것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고건 총리가 탄핵정국으로 위기감을 느낀 일부 수구집단의 눈치를 보며, 국민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 분위기를 틀타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일종의 ‘선거 공안정국’에 다름 아니다.
4. 과거 군사정부 시절부터 권력의 양지만을 골라 영달을 누려 온 고건 총리는 탄핵정국으로 얼떨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으나, ‘참여정부’의 머슴일 뿐 결코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고건 총리가 수구집단의 눈치나 살피며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은,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이다. 주인을 배신한 머슴을 더 이상 집에 들 수 없듯이, 국민을 배신한 '참여정부의 머슴'은 더 이상 쓸 모가 없다.

5. 우리 전교조는 위원장의 불법 연행이라는 비상한 탄압상황에 대해, '고건 총리 규탄운동' 및 '대규모 항의집회', '법률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연히 맞설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집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만큼, 오는 총선에서 부패, 무능, 반개혁적 세력이 더 이상 국회의사당에 발불이지 못하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끝.



<보도자료>
2004년 4월 2일(금)

민주노동당 중앙선거대책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4층)
- 전화 : (02)7611-333 전송 : (02)7614-115
- 대변인 : 김종철 (761-1333, 011-9076-8827)
- 부대변인 : 김배근 (761-1333, 011-9472-9920)
김성희 (761-1333, 019-254-4354)

<성명>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중단하라

2일 경찰이 민주노동당 지지를 표명하고 탄핵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와 전국교직원노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탄핵 관련 시국선언 협의로 전교조 총북지부장을 긴급체포하고 전교조 시도지부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정부당국의 모습이 과거 독재시절이나 있음직한 전근대적인 행태라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공무원과 교사는 사회적 신분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누구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사회,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치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더구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현행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대학 교수는 정당가입까지 허용하고 교사는 일체의 정치적 표현마저 금지하는 것은 불평등할 뿐 아니라 학생들을 정치적 미숙아로 생각하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대통령과 장관에게는 지지선언에 정당가입까지 허용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업무상의 정치활동도 아닌 정치적 의사표현마저 처벌하겠다면, 그 누가 이 정치적 차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정부당국의 이러한 대대적인 탄압은 공무원과 교사의 입과 손발을 묶고 정치적 굴종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행태일 뿐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공무원과 교사를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동원하는 불행한 역사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끝>

2004년 4월 2일

민주노동당

당연한 권리, 당당한 투쟁
“공무원 정치활동 반드시 회복할 것”

30일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촉구 및 민주노동당지지 선언 기자회견’
“당연한 천부인권 되찾을 것…, 유일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지지”

총선을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주장이 공무원노조 현장조합원의 구체적인 실천과 중앙차원의 조합원 정치교양, 조직사업 강화 등으로 윤곽이 뚜렷해졌다.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길)은 영등포 중앙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표명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아, 군사독재권력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사용해 왔다”며, “우리의 선언은 천부인권을 되찾고자 함이며,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지지와 관련해서도 “썩어빠진 정치권력으로부터 나라와 민중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정당,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며, “공무원 정치활동 회복 선언은 단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 현실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총선 대응방침’을 통해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투표는 전국사업으로 진행한다.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역단위별로 지지임호 한다는 투표전술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의제설정을 본격화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딴지를 거는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 ▲정당명부 투표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적극지지를 위한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서한문 발송 ▲민주노동당의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지?성원 ▲총선연대 낙천대상자에 대한 낙선훈련 연대투쟁 ▲제 정당의 공무원노조 관련 주요정책 비교안 제시 ▲정치후원금 모금운동 전개 ▲제16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평가를 통한 심판 ▲제17대 총선후보자 정책질의 답변서 표준안 마련, 개별질의를 통한 검증 ▲현장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간부들의 정치교양과 조직사업강화 등의 실천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농성을 즉각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점기 부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김상걸 부위원장, 김형철 정치위원회 위원장, 고광식 통일위원장, 정용해 대변인과 ‘공무원 정치자유를 위한 연석회의’ 법률자문단 김정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봇물터진 공무원 정치적 의사표명, 사법처리로 막을 수 있나?
시대착오적인 협행법 뜯어고칠 계기로 삼아야

최현주 기자 2004-04-02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선언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에 대해 정부가 예고한대로 칼을 빼들었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차 출석요구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며 탄핵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과 함께 공무원노조 집행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전공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정부의 강경처벌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수차례에 걸쳐 "강경대응" 입장을 밝혀온 정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4월 1일 사법처리까지 강행하겠다고 선포했다. 오전에는 고건 대통령직무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오후에는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단순가담자까지 엄중조치하겠다고 선포했다.

위법 운운하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협행법을 개정해야

정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법 등 협행법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특정정당 지지선언이나 전교조의 탄핵시국선언은 모두 위법이라는 입장이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관건선거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전공노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협행법을 뜯어 고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88만명에 달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 전반을 금지하고 있는 협행법은 우선 지나치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부터 문제로 지적된다. 직무수행 상 아무런 지장도 없는 특정 정당 지지선언까지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선거법은 헌법의 참정권에 위배됨은 물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립대 교수 등의 고위 공직자들은 정당가입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학계와 법조계도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계수 건국대 법대 교수는 2일 열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보장 정책토론회'에서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다수의 국민들을 소외·억압시키는 정치는 그만되어야 한다"며 공무원법 등 관련 법들의 재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주공화국에서 정치는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찬 반 50% 정도로 나오며 조사에 따라서는 정치적 자유 인정을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다. 국민들 스스로가 국가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무원법을 새롭게 고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7대 국회는 행정가들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의 여론변화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민종 변호사도 같은 토론회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의사표명은 물론 정치단체에서의 활동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위헌적이고 역사적 수명을 다한 악법을 적용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공노 "위헌적인 공무원법, 선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할 터"

한편 정부의 강경대응 선포와 경찰의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차분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전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탄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4월 15일 이후에 자진출두하겠다고 알렸다"고 설명하며 체포영장 청구는 지나치게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항의했다.

전공노는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와 선관위와 행자부 홈페이지에서의 사이버 시위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활동을 계획 중이다. 또한, 협행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미 23인의 변호인으로 법률지원단이 꾸려져 공무원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 법률지원단의 간사 역할을 하는 김정진 변호사는 "이미 법률적 검토는 마쳤다. 공무원노조가 시점을 정하는대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는 4월 15일 총선 후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의 초강경 대응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 전으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우리만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서울시 종로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207호 / T. 754-8856 / F. 319-2039 / E-mail cDMI@korea.com

성 명 서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선거법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4월 2일(금)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단 위원장과 서울지부장, 충북지부장을 '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하였다. 또한 나머지 전교조 시도지부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긴급 체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 정치 촉구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인터넷에 민주노동당 지지방침을 올린 것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23일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절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품으로 저항할 것이다"라고 결의하며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무원 노조 지도부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이는 고건 총리가 이날 아침 국무조정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 '엄단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선거법'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과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정치 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누릴 수 있음에도, 이를 막는 것은 국

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이 정치 또는 정책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의 고유법칙성을 가지는 행정에 의하여 특수이익 대신 공익을 증진시켜 공무원이 직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임을 상기해 볼 때 헌법에 보장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표현한 것만으로 국가 공무원법, 공직선서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서구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의원 입후보를 비롯하여 기타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북구 유럽국가들은 의원직에 당선 된 후에도 동시겸직도 허용하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공무원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하급직은 의원입후보 및 기타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중간직 공무원은 의원입후보 이외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반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장관 등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것은 허용하는 반면, 이외 공무원에게는 업무상의 정치활동도 아닌 정치적 의사표현마저 처벌하는 이중적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는 공무원을 권력을 시녀로 묶여놓음으로써 자신의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았던 과거 독재정권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전교조의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16대 국회의 부패와 무능을 지적한 것이었으며,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민노당지지 글 역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었다. 만약, '부패정치 청산과 개혁정치'를 촉구한 것만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광화문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수호와 부패정치 청산'을 요구하였던 수백만의 국민들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가?

특히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을 체포영장도 없이 미란다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 하였다는 것은 정부가 선거 분위기를 톰타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더욱 명백히 보여준다. 정부는 선거법을 빌미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결정 및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2004년 4월 3일(토)

민주노동당 중앙선거대책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4층)
- 전화 : (02)7611-3333 전송 : (02)7614-1115
- 대변인 : 김종철 (761-1333, 011-9076-8827)
- 부대변인 : 김배근 (761-1333, 011-9472-9920)
김성희 (761-1333, 019-254-4354)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중단하라

지난 2일 경찰은 민주노동당 지지를 표명하고 탄핵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 노조 원영만 위원장을 체포한데 이어 전교조 충북, 경남, 서울 지부장을 긴급체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당국의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와 긴급체포는 헌법 정신과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과 교사는 사회적 신분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나아가 구속 수배를 각오해야 한다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이미 관속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직무와 상관없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한 제재는 일부 후진적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또한 고위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의 정치 활동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입장표명에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수십년 금기를 깨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 허용에 대해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민주국가라면 이러한 전기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민적 토론을 활성화해 제도적 진전으로 수렴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보다 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국민의 요구를 묵살해온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히 침해당한 이번 사건에 대해 기성 보수 정당이 보여준 자세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이해는 하나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교사, 공무원 노조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개혁을 말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는 허용되고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위법이라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은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처벌과 탄압을 사주했다. 우리는 이 당이 과연 정치참여의 자유와 다원적 질서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제와 횡령에 대한 집착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정부당국이 최소한의 민주적 양식을 갖추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판단 때문에 구속받는 구시대 폐해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당국의 이성적 대처와 더불어 원영관 위원장과 전교조 총북지부장 석방, 전교조 및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이를 민주노동당과 이 사회의 양심과 상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와같은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 노조, 전교조는 물론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가로막는 현행 법을 헌법정신에 맞춰 대폭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2004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김승환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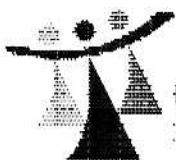
(560-04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60-7 동부화재 4층 E-mail: onespark@chol.com http://onespark.or.kr

수신처	전북지역의 노동·사회단체 및 전북 언론사
참고	언론사는 사회부
내용	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담당자	

보도자료(4월 4일 일요일)

1. 전교조의 교사시국선언,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표명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오던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 간부들을 강제연행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2. 지난 2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돼 3일 불구속 기소로 풀여난 데 이어 경찰은 다시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영동포 경찰서를 방문한 공무원노조 간부 20여명을 또 다시 강제연행하는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3. 전교조의 ‘교사시국선언’과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은 지금까지 가짜 민주주의로 국민을 정치의 들러리로 만들면서 탄핵사태까지 빚어낸 16대 국회와 노무현 정권, 여기서 비롯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보수정치에 대한 비판이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담은 것으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다.
4.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명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무리하게 법적용을 해 ‘구속과 징계’로 답하는 것은 충선을 빌미로 한 노조탄압이고,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경백한 기본권 침해 행위이다.
5.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하위법인 공무원법과 선기법에서 오히려 공무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기로막는 것은 헌법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일 뿐이다. 이를 빌미로 무조건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구태의연한 모습과 다를 게 없다.
6.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정부의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비인권적이고, 물상식적인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 공무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진보정치 실현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



문서번호 : 04사무04-07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참 조 : 법조출입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 김용찬 간사)

제 목 : <논평> 검찰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과잉대응이다!

전송일자 : 2004. 4. 6.(화)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2매

<논평> 검찰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과잉대응이다!

검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중앙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아가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뜻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공무원노조의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도 체포 및 구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위 행위들이 현행 공무원법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나아가 반드시 구속해야 할 정도의 사안인지 하는 점에는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초석이 되는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공무원법과 선거법은 정무직인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또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의 행위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구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가 금지되는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고 보다 정밀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해서 소속 노조원들의 직무수행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 선언이 노조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 번 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지지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구체적인 행위가 전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공무원노조의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의 위 행위를 실정법위반으로 문제삼는다고 하더라도 선거 후에 바람직한 법률의 정비방향과 함께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정치관련법과 선거법 및 공무원법 등을 대통령과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법원이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적 수준을 높여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4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

탄핵무효 진보정치실현 전북민중연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3-1 / 전화 273-2001 / 팩스 273-2013 - 대표 송용기 신동진 이세우 유제호

담당 : 김종섭 (017-659-5715)

보도자료 - 성명(4월7일)

전공노 김정수 부위원장 구속에 대한 성명

민주세력이라는 참여정부 부끄럽다.

- 민노당지지가 사법처리면 대통령의 탄핵도 정당한가?-

- •
- 4월6일 서울지방법원이 진행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전북민중연대는 강력히 규탄한다.
- 과거 기득권 정치세력이 관권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고자 했던 현행 선거법이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것은 보수세력의 기득권 찾아주기이다.
- 이번 기회에 참여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은 드러나고 말았다. 대통령의 특정당 지지발언에는 외국 사례까지 들먹이며 두둔하더니 유독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 탄압하는 것은 날로 성장하는 공무원노조를 흡집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전교조 위원장은 석방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구속하며 이중적 잣대를 들이던 것은 공직사회개혁을 열망하는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비열한 정치탄압이다.
- 우리는 금번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진보정치에 대한 요구와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훼손시키려는 일부 수구 공안세력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 기본권 친권과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탄핵무효 · 진보정치실현 전북민중연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전북지역교수노조,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기틀릭노동사무소 노동자 의집, 전주완주연합, 순창민주연합, 김제민주연합, 정읍민주연합, 노동의미래를여는 현장연대,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다함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회당 전북도지부(주),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기틀릭농민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22개단체)



<보도자료>
2004년 4월 7일(수)

민주노동당 중앙선거대책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4층)
- 전화 : 02)7611-3333 전송 : 02)7614-1115
- 대변인 : 김종철 (761-1333, 011-9076-8827)
- 부대변인 : 김배곤 (761-1333, 011-9472-9920)
김성희 (761-1333, 019-254-4354)

<성 명>

공무원 정치적 자유, 구속과 수배로 막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전국공무원 노조 부위원장들이 구속·체포되었다. 총선 후 자진출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가택수사, 전화감청까지 자행하며 전격적으로 진행된 사법처리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거듭 밝히건데,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공무원 역시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시대는 초고속으로 변하고 있는데 역전히 공무원을 정권의 나팔수, 정치적 무뇌아로 만들겠다는 당국의 구시대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당국이 그렇게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선진국에 벼금가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면서 정작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는 풍풍 둑어두겠다니 정치후진국의 불명예를 당국이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치발전은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국민참여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각종 부당한 이유를 들이밀며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것 투성이니 어떻게 정치가 제대로 개혁될 수 있겠는가.

민주노동당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공무원 노조의 결정에 구속과 수배를 강요하는 정부당국의 비이성적인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의사표현 마저 계속해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당국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정부당국은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기전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된 부위원장들 석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규제하려는 낡은 사고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바란다.

2004년 4월 7일

민주노동당